

●국토교통부령 제154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시·도를”을 “시·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간을”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5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 운행실습이 8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터미널사업자”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의 노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차·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 정비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의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자·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3조의10제2항제7호가목 중 “자동차 관리 계획”을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외관에 표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3조의12제2항제1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임원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5. 운송가맹점의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외관에 표시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4의3 제1호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첨부서류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16,000원 |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의 양수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양수자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증명하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제출합니다) 2.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4.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6.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제출합니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선운송사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선운송사업자가 종전의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운전면허의 나이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게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8조제2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가 포함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둘 이상의 시·도 및 해당 도시 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함.

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요건(안 제49조제1항제2호)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의 나이 요건을 운전면허의 나이 요건을 고려하여 20세에서 18세로 완화함.
-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80시간 이상의 운행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안 제88조의2 신설)

시·도지사는 도로의 노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차·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 의견을 들어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93조의1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구역을 변경하거나 운송가맹점의 자동차 관리 계획 중 자동차 외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